#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61 발의연월일: 2025. 4. 11.

발 의 자:이수진・김문수・김준혁

송옥주 · 허성무 · 전종덕

김정호 • 위성곤 • 문금주

백혜런 • 박홍근 • 서영교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기구이고, 상임위원 2인은 국토교통부의 고위직 공무원이 겸하고 있으며, 항공·철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위원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지난 12·29여객기참사에서와 같이 항공·철도 당국의 행정 관리사무가 사고원인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사대상에 포함되 는 경우에는 현행 위원회의 구성상 국토교통부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른바'셀프조사'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 수를 12인으로 하며, 위원 중 6인을 국회 추천으로 하고,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개편함으로써 위원회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사고원인의 신속한 규명과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에 기

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 법률 제 호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에"를 "대통령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를 "12인의"로,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을 "2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을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6인의 위원은"으로, "임명하며"를 "임명 또는 위촉하며"로, "비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를 "나머지 6인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대통령이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 ④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5호 및 제6호 중 "임직원"을 각각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항공·철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나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퇴직 전 5년 동안 해당 부서나 기관에 소속하였던 공무원 제11조 중 "연임할"을 "2차에 한하여 연임할"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 제3조(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상임위원은 제6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8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4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의 설치) ① 항공·철도사고등	의 설치) ①
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	
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국토교통부에</u> 항공·철	<u>대통령 소속으로</u>
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적인	<u>&lt;삭 제&gt;</u>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지휘・감독하되, 사고조사에 대	
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u>12인의</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	<u>2인은</u>
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	②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령이 <u>임명하며</u> , <u>비상임위원은</u>	<u>6인의 위원은임명</u>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또는 위촉하며나머지 6인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
	통령이 임명한다.
③ 상임위원의 직급에 관하여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며,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 <신 설>

-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저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1. ~ 4. (생략)
  - 5.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그 장비품의 제조·개조·정비 및 판매사업 그 밖에 항공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
  - 6.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차량을 제작·조립또는 수입하는 자, 철도건설관련 시공업자 또는 철도용품 ·장비 판매사업자 그 밖의 철도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및 그 임직원

# <신 설>

-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 는 3년으로 하되, <u>연임할</u> 수 있 다.
- 제3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생략)
  - ② 위원회는 <u>국토교통부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출 석하여 발언하는 위원장·위원 ·자문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 여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7. 항공ㆍ철도관런 업무를 수행
하는 부서나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퇴직 전 5년 동
안 해당 부서나 기관에 소속
하였던 공무원
제11조(위원의 임기)
2차에 한하
여 연임할
제3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u>대통령령으로</u>